

2023년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종합감사 결과

2023. 1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9. 4. ~ 9. 8.(5일간)
- 감사범위: 2020.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감사단장 외 6명
- 감사중점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 유물 전시(상시 및 특별전) 운영 및 보관(수장고) 실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여부
 - 인력(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 청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기타 사업소 운영 관리 전반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계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10	6	4	-	-	4,259	4,259	-	-	-	-	-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야	지적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박물관운영	수장고 출입 기록 관리 미흡	◇부	주의	-	-	-	
2	박물관운영	소장유물 등록 관리 소홀	◇부	시정	-	-	-	
3	복 무	복무관리 소홀	○부	시정	회수 74	-	-	
4	회 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부	주의	-	-	-	
5	공 사	건설공사·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처리 소홀	●부, ◇부, □관	시정	회수 2,492	-	-	
6	공 사	건설공사 건강보험·연금보험 사후정산 처리 소홀	□관, ■관	시정	회수 1,693	-	-	
7	공 사	건설공사 발주자 적정 공사 기간 입찰공고 안내 소홀	◇부, ■관	주의	-	-	-	
8	에 너 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확보 소홀	◆관, □관, ■관	시정	-	-	-	
9	시설물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소홀	○부, ◆관, □관, ■관	시정 주의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장고 출입 기록 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시립 박물관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시립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장고 관리책임자인 분임 유물관리관은 수장고 열쇠출납부 및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는 때에는 분임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고 분임 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관리 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와 공휴일 및 근무 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수장고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 ~ 20**.*.*까지 수장고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관리 사무 외에 해충방제, 유물 대여·운송, 공사·수리·점검 등을 위해 외부 업체가 수장고를 000회 출입하였고, 이 중 00회의 출입에 대하여 업체명 누락, 외부 출입자 누락, 1인 단독출입으로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① 시립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에 따라 수장고 출입일지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수장고 출입일지 관리에 만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소장유물 등록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분임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 대장과 유물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수집된 유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공부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9조(물품의 분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물품 분류 번호)에 의하면 소관 물품을 관리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물품 분류 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시립박물관에서는 유물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의 등록 및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유물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20**. *월에 구입한 유물에 대해서만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가등록만을 하고 있는 등 유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① 미등록된 유물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며 조속한 기간 내 등록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및 「2021년 공무원직 단체협약서」에 따라 청원경찰과 공무원에 준용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직원 00명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였다.

- 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①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지급액 000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회수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복무와 관련하여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데 소홀하였다.

또한, 20**년과 20**년에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받아 관리하여야 했으나 지급관리대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공사·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부, □관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6.2.)」 제4조(계상 의무 및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 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 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 ○○○○ ▽▽▽ ◆◆공사’ 외 00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하며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지출된 000원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건설공사 준공 시 정산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등 정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공사 건강보험·연금보험 사후정산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 ■관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의 원칙)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등을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②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③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④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산 절차에 따라 공사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납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 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 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관과 ■관에서는 “▽▽▽▽▽ □□□ ●●● △△ 공사”와 “◆◆◆◆◆ ▲▲▲ ◎ ●●●● ●● 공사”를 정산 준공하면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 중 사업주 부담 금액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 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총 000원을 과다 지출하여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① “▽▽▽▽▽ □□□ ●●● △△공사 ” 및 “◆◆◆◆◆ ▲▲▲ ◎ ●●●● ●●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료 사후정산 부담 지급액 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설공사 준공 시에는 건강·연금 보험료 등에 대한 개인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산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발주자 적정 공사 기간 입찰공고 안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부,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는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 기간 안내공고를 통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건설진흥기술법」 제45조의2(공사 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에 따라 2021. 9. 17. 이후 입찰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표]와 같이 ‘○○○○○ ▲▲▲ ◆◆ □□□□ ●●공사’
외 00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준공 시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
고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주의] 건설공사 발주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 관련 서류에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확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관, □관,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사 주차장에 대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2항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 등 5개 기관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은 총 00면 중 10% 이상인 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지 않았다

또한 ●●●●●, □□□□□□□□□□은 주차면은 확보(**.*%, *.*.*)하였으나, 흰색 실선으로 구획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파란색 실선으로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하시고, ●●●●●, □□□□□□□□□□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 주차구획을 파란색 실선으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관 계 부 서 ○, ◆관, □관, ■관

내 용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소방 훈련 등의 소방 안전 관리를 하고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다.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감독직 직위에 있는 자 등) 제1항에 따라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 ◆관, □관, ■관에서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주무관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표 작성 소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5항에 따르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 조항이 [시행 2022. 12. 1.] 되었으나,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별지 12호서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월 1회 이상 작성 및 관리하지 않는 등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은

[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직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